

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0. 7. 23.(금) 10 : 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3건 =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	-----	15
3.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19

<의안번호 제2010 - 28>

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년 6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년 7월 8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7월 16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'사회적기업'의 설립 및 육성 ·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'예비사회적기업'의 설립 및 육성 ·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·제2조)
-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 - 위원회의 심의기능 :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,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,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,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 -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며, 해당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
-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

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육성에
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-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시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.
 -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의 지원·융자, 국·공유지 임대 및 불용품 무상양여 등 시설비 등의 지원(안 제6조)
 - 경영·법률·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경영지원(안 제7조)
 -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민간소비 장려 등의 판로 개척(안 제8조)
 -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(안 제9조)
 -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 장려(안 제10조)
 -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동 추진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·육성 참여 확충을 위한 민간 기업·단체 간 교류·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(안 제11조)
 -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(안 제12조)

-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).
 -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경비·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-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반환,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, 제15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2007. 1. 3 제정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관계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「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- 이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부터 제2조(목적 및 정의)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조항이며,
 - 안 제3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)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안 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), 안 제5조 (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육성), 안 제6조(시설비 등의 지원), 안 제7조(경영지원 등), 안 제8조(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), 안 제13조(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, 발굴·육성, 지원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안 제9조(지방세 감면)는 사회적기업 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세법」 및 「거창군세 감면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안 제10조(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), 안 제11조 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는 군수가 민간위탁 또는 대행사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확충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0 - 29>

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년 6월 30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년 7월 8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7월 16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 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.

-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과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·공표, 구매실적관리, 구매의무의 범위 및 구매 예외사항,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·운영 및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).
- 친환경상품의 생산·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내기업 및 산·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지원, 친환경상품 관련정보의 제공,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).
-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와 친환경상품의 생산·구매촉진 유공자 포상,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(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2004. 12. 31제정된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「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- 이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,
 - (1) 안 제1조부터 제2조(목적 및 정의)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필요 조항이며,
 - (2) 안 제2장(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)은 친환경상 품의 구매촉진 심의,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·시행, 구매이 행계획의 수립·공표, 실적관리, 구매의무의 범위 등을 명 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3) 안 제3장(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)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, 산·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, 정보제공,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기술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(4)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0 - 30호>

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
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0년 6월 30일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0년 7월 8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년 7월 16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'지역재향군인회장'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하고,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'통합방위예규'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○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등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'지역 재향군인회장'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).

- 회의개최,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- 「통합방위법」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·해제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서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지사 등 시·도지사로 변경되고, 선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함(안 제5조 삭제).
-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‘거창군 통합방위예규’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2009. 5. 21 「통합방위법」 개정, 2009. 11. 17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“지역재향군인회장”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, 법에 맞지 않는 제5조를 삭제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제6조를 신설하는

「통합방위법」 및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.
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